

서대문구 운영 · 관리시설 감면 관련 조례 현황

연번	조례명	근거조항	감면추진사항	타구감면 현황	담당부서
1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	<p>○ 제7조 관람료의 면제 등</p> <p>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</p> <p>2.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(다만,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)</p>	- 이용료 감면	<p><타구 유사 감면 현황></p> <p>○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지 관람료 면제 - 다자녀가정 셋제이상 아동 <u>관람료 면제</u></p>	문화 체육과
2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	<p>○ 제4조 주차요금 징수대상</p> <p>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.</p> <p>②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</p>	- 이용료 감면	<p>○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감면 -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<u>50%감면</u></p> <p>○ 성북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- 다동이 가족 <u>관람료 면제</u></p>	일자리 경제과